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0. 8 선고 2023가단5213672 판결 [구상금 등 청구]

전 문

원고신용보증기금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

담당변호사 김형민, 백윤종

피고A

변론 종결2024. 9. 24.

판결 선고2024. 10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59,560,390원 및 그중 58,745,797원에 대하여 2023. 5. 31.부터 2023. 10. 22.까지는 연 8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8호증의

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59,560,390원(= 대위변제금 58,745,797원 + 대지급금 814,593원) 및 그중 대위변제금 58,745,79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. 5. 31.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3. 10. 22.까지는 약정손해금율 연 8%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(피고는 서울회생법원 2023개회1056926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23. 7. 21.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나, 2024. 7. 17.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위 폐지결정이 확정되었고,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가 확정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).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.

판사강신영

별지